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규환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544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30.
발의자 : 김규환 · 김명연 · 최연혜
송기현 · 염동열 · 김기선
원유철 · 박순자 · 이명수
홍문표 · 김현아 · 문진국
임이자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,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장수 중견기업 육성책 마련이 시급함.

그러나 현행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만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, 중견기업은 명문장수기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.

이에 중견기업도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2 신설).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5조의2(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) 중견기업은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2,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<u>제15조의2(명문장수기업에 관한 특례)</u>) 중견기업은 「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0호의2, 제62조의4부터 제62조의 6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다.</p>